

대학원학칙 의용과학대학원 시행세칙

2004. 3. 1 제정

2014. 3. 1 개정

2015. 3. 1. 일부개정

2020. 3. 1. 일부개정

<의용과학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대학원학칙」이 의용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의용과학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일층 심오하고 정밀하게 연구하며, 나아가서는 과학도로서의 지도자적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여 과학발전에 공헌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제4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제5조(수업과 방법)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다.

② 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방법으로는 통상적인 출석수업 외에 학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도 가능하다.

④ 수업은 학과 소속 캠퍼스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학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학점은 학기 당 최소 2학점 이상, 최대 8학점 이내로 한다.

제7조(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학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수료학점)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6학점 이상이며, 기초공통 4학점, 세미나 4학점, 논문지도 4학점, 전공 1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9조(이수지정과목) 대학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이수한 입학자는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휴학기간은 5학기로 한다.

② 군복무, 임신·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한다.
- ④ 임신·출산, 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장 2년 이내로 한다.
- ⑤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1조(학과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학기 수료 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학기 초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신청서
2. 학업성적증명서
3. 지도교수변경허가원

제12조(학점인정) 제11조에 의거 전공학과를 변경한 자는 변경 전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전공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기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학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지도교수신청 및 변경) ① 지도교수 배정 시기는 2학기 수료 후 제3학기 초 30일 이내로 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 예정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도교수변경허가원
2. 학과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1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전공 2과목 이상으로 하고 그 과목 및 내용은 해당 학과별 종합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3학기 동안 18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3.0(B)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분으로 하고, 시험 성적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전반 및 결과에 대한 자료는 의용과학대학원 행정실(이하 “행정실”이라 함)에서 보관한다.

제16조(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실시한다.

제17조(종합시험 위원회) ① 종합시험은 대학원장 주관 하에 학과별 종합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장한다.

② 종합시험위원회 구성은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18조(학위청구 자격) 대학원에서 정한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5학기 이상 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제1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및 제출연한)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제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원고 3부 및 석사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군복무(의무복무)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제출연한에 산입한다.

⑤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0조(학위청구논문 심사방법 및 시기) ① 논문의 심사방법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논문내용에 대한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②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시험은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하여 판정한다.

제21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하며,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는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맡으면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제22조(장학금) ① 신입생으로서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 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장학금의 수혜자 수와 지급액은 매 학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3조(대학원위원회의) ①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이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4조(공정한 전형의 시행) ① 입학전형은 사전에 확정된 일시와 절차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임의적인 전형의 변경 및 왜곡은 금지한다.

② 입학전형 회피 및 제척 대상은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모든 본교 교직원으로 한다.

1. 회피제: 전형위원을 포함한 전형참여 교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녀 및 친인척(4촌)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지원한 전형의 평가 및 운영 관련 업무 전반을 회피해야 한다.

2. 제척제: 전형위원을 포함한 전형참여 교직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입학전형에 지원한 경우 해당 전형의 평가 및 운영 관련 업무 전반에서 제외한다.

③ 입학참여 교직원이 전형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나 상황을 인식할 시에는 이를 보고체계에 의하여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발과정에 있어 지원자와 지원자 부모의 종교,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출신 학교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서약) 전형위원을 포함하여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모든 교직원은 교육이념과 목적에 합당한 지원자격, 전형의 목표, 전형 요소 등 입시요강에 따라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별첨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또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이 대학원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3조 개정)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개정, 제7조, 제 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조번호 변경)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개정, 제7조, 제 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조번호 변경)

별첨 1

전형위원 및 전형참여 교직원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본인은 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이하 ‘본원’라 함) 입학전형운영에 참여하여 책무를 다하고, 대학원 전형에 관련된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취득한 전형 및 입시에 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2. 입학전형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허가 받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며, 입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시에만 정보처리 시설을 이용하고 사적으로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
4. 본교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저장매체 일체를 관련 업무 수행 중 사용하지 않는다.
5. 본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 또는 지원자와 관계된 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청탁도 받지 않으며, 청탁에 관계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하여 본교의 조치에 따른다.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및 자녀를 포함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본원을 지원할 경우 이를 본원에 알리고 전형 참여 여부를 허가 받는다.

작성자 : (서명)

20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 귀중